

제2695호
2019. 12. 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 제2019-149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 제2019-150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

● 공 고

- 제2019-90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4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43-3외 1 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31	2019. 12. 4.	필동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5. 26	행정구역 명칭 반영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3길 16-13	2019. 12. 4.	퇴계로53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50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3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43-3	2019.12.4.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27-2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42-4	2019.12.4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3길 16-13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2-6	2019.12.4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공 고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902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성 있는 발행방안 마련을 위해 규칙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을
 -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발행 규칙」으로 변경
- 나. 목적 및 편집과 게재순서 등(안 제1조~제2조)
 - 구보의 순서 열거가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휘보란 ⇒ 기타란)
- 다. 게재의뢰(안 제3조)
 - 직위의 현행화(법무기능담당관 ⇒ 자치법규총괄부서의 장)
- 라. 구보 발행 관련 사항(안 제4조~제6조)
 - 전자구보로 발간하여 구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연1회 인쇄물로 제작
 - 구보 발행일 명시조항 신설
 - 인쇄물의 배부, 비치기 아닌 전자망 게시를 통한 구보 배포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홍보전산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6층), 문의전화:02-3396-4955, FAX:02-3396-9022, 메일: ohs693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발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발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의 편찬·발간·보급 그 밖의 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에는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에는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공포번호 순서대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라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3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자치법규총괄부서의 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게재조정)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④ 공보행정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종이구보를 인쇄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